논리로 보아서 무리한 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금 왜 그 무리한 점들이 나타나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 이하에서 설명 드릴 내용이 그것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무리한 점들이 이 법안에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보통신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냐, 정부조직법도 있지만, 정보통신부의 고유한 업무 영역과 권한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입니다. 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정보화 촉진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누가 추진하느냐. 정보화 추진 위원회가 추진합니다. 그럼 정보화 추진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쪽에서도 위원을 선임하고 행정 부처 팀에서도 사람을 선임해서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중앙 정부 부처나 행정 자치 단체하고 협력하고 조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정보통신부가 합니다. 그것이 정보통신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보면 정보통신부가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는지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고 아주 개괄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다룬다 하고 그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법안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전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 법 조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그냥 권장 사항으로 지나지 않던 것이 보칙에 벌칙 규정을 두어 가지고 전부 다 상당 부분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 개정안에서 보면 「한국정보보호센터」도 시행 명령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제 이 법안 안에 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보호원」으로 승격이 되고 사실상 준 사법적 권한을 갖는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되구요. 또 아까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은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민간 재단 법인이 한국 인터넷 정보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인데 그 권한도 정보통신부로 갖고 옵니다. (이후 발제 내용은 녹음불량으로 문서화하지 못했습니다. 발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우선 두 분 패널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Floor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상임위가 이 소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신종철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 통신 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응휘 처장님이 하도 상세하게 이모저모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 의원입니다만은 정부가 이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마련하고 또 입법, 여러 정당계에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의 선의를 절대로 의심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건전성 문제가, 특히 우리 사회의 도덕적 황폐화를 우려하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어른들로부터 많은 압력이 조성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통부가 이런 법안까지 만들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부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건전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함으로써 그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에 수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처들이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규제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부는 적어도 인터넷 상에서의 창조적 공간들이 더욱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그런 방어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처장님 발제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정부가 작은 정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법안을 매개로 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원을 줄이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작은 정부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 사회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자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정부가 손대지 않는 것, 시민 사회의 기능과 그 자율적인 능력을 최대한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고 권력 행사하는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축소하는 것이 진정 작은 정부의 본 면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최초의 법안은 상당히 시민 단체들이나 네티즌들의 반발에 의해서 많이 완화된 수준의 법안이 오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나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많은 부분 최초안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장 우리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 정보에 대해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정안 45조 부분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흔히 근본적으로 아무리 엄격하게 법조문을 제한하고 규정을 엄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르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 제한성이 무장 해제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아 왔습니다. 오랫동안 정부의 법 운영에 대해서, 또 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권력과 권한을 강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오랜 경험 속에서 이 법이 인터넷 스페이스에서의 사실상의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클 것이다, 그런 자의적 판단과 시대적 상황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악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재된 법이라는 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많이 분노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우리의 선의는 그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들 시끄럽게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그리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법 운영에 대한 또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한 그런 경험적 판단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은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증폭되고 파문이 확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진정으로 작은 정부에 대한 천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더 이 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대안적 의견을 제시해 본다면,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등급 부여를 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에서는 일단은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 정보의 제공자들에게 청소년 보호법 안에 규정된 그런 서비스 제공자만이 의무적으로 등급 부여를 자체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등급 부여를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 보호법안 상의 의무적인 등급 부여를 해야 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까지도 뭉뚱그려서 포함해서 저는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을 최소화시키고 예컨대 정보 서비스 제공자들 ISP들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해서 이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등급 부여를 자율적으로 하게 만든다든지, 또 그것들이 사업 주체들간의 등급 부여이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시민 단체들의 감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서 도와 주고 그런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정통부가 의도하는 정도의, 이 개정안에 나타난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러고서도 여전히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증폭되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려 한다면 그 때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서도 얼마든지 시민 사회의 자율적인 기능 속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보다 깊은 고민 없이, 혹은 그런 수단, 장치들에 대한 배려 없이 우선 정부가 떠맡고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권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들을 특히 정통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이 안은 아직 입법 예고가 되지 않은 안이니까 충분히 많이 수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하고 규제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이 법안의 명칭도 수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개인 정보 보호를 훨씬 강화하는 그런 쪽의 법안으로 법안의 성격이 탈바꿈해서 나중에 입법 예고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정부 규제에 대한 기본 관점을 둔 얘기들이었습니다. 또 ISP들의 자발적 출연 혹은 자발적 등급 결정 부여, ? 얘기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개인 정보 보호에 우선 치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철 실장님께 토론을 맡기겠습니다.

▶ 신종철 실장

세 분 발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유교수님께서는 국가의 위상이나 역할을 중심으로 문제를 봐 주셨고, 전처장님께서는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오늘의 초점이고요, 그것의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 법안입니다. 즉 규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시장 규제나 정부 규제, 자율 규제의 세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하면, 정부 규제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반영하거나 수단이 명백하다든가 그런 등등의 문제, 또 반면에 그것이 갖는 경직성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 정보 사회로의 변화가 상당히 빠른 상황에서 규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한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법과 관련된 문제의 지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정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이거나 개념적인, 철학적인 문제의 충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표현

의 자유 문제라든가 등급제의 문제 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급제의 문제는 아까 전응휘 처장님 발제에서 왜 그것이 네티즌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가,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느냐, 국민적 관점에서 보느냐, 기업적 관점에서 보느냐, 규제적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지점들을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합의 형성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정보통신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이것은 기안이고, 초안이고,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일종의 합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할 때라고 하면, 전응휘 처장님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의 기안의 문제들에 있어서 합의 형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과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그릇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미 유교수님이 얘기하신 국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이 차원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경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율 규제의 기능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를 해 나가는 미국 사회와 같은 그러한 예들을 볼 수 있겠는가, 아마 정통부에서 얘기하는 오늘날 소프트웨어의 규제가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또는 공적인 감시 기능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또 배경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갖는 규제 중심 권력 강화의 경향성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향은 과다한 규제와 정부 권한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신 질서 확립법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있어서도 최근의 정부 주도의 민간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있고 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보면 과연 정부 조직 형태에 있어서의 민간 협의회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관련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행자부에서 인터넷 조례안 제정 지침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침을 내려보냈고, 아마 성남에선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초안이라는 성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통부의 권한 집중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응휘 처장님께서 보셨는데 그런 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꼭 정통부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개인 정보 분쟁 위원회가 과연 정통부 산하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독립 기구로서 포괄적인 오프라인·온라인의 사생활 보호의 위원회로 발전해야 되느냐, 이런 등의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등급제 관련되서 민간 영역으로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 위원회가 과연 규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당연히 기구들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익히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규제 문제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정부 규제 중심에 자율 규제가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의 자율 규제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제한에 의한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응휘 처장님이 제기하는 자율 규제 중심의 사회로 가자라는 것과는 규제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보사회 발전뿐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발전 속에서 한국적 규제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그것이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본화하되 자율적인 규제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이견이 없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 시민 단체가 삼각 규제의 형태로서의 상호보완적 기능들을 가져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 시민 사회 단체의 역할들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규제와 보호 장치의 마련, 또는 정보 사회에 대한 촉진자의 기능 이런 부분들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과도한 그릇은 이러한 개념들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있어서의 자율 규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자율 규제의 영역과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바로 정부

와 기업, 시민 단체가 같이 연구하고 또는 제도화시켜 내거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 단체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규제와 감시의 기능들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 규제의 영역이나 정부 영역에 있어서의 과도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과정으로서의 협의의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 시스템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까 발언 중에서 나왔는데요, 인증제가 어떻게 정착되어지며 어떻게 제도화되는가는 역시 별로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 부분의 영역이 어떤 합의 과정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합의 형성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통부에서 많은 노력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결국 합의 형성 과정에 일정 정도 실패한 것이 현재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토론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토론이 사실은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굳이 Floor에 계신 분들하고 단상에 계신 분들을 구분을 두지 않고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 내용 등급 표시제, 인터넷 등급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세부 토론은 2부 토론으로 남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발제자 선생님들과 패널들에게서 나온 토론의 쟁점들을 제가 간추려 보면, 우선 온라인에 관련된 질서에 관해서 시민 사회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이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극단적 두 대칭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도 정부의 역할은 전혀 필요가 없고, 시민 사회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거나, 또는 시민 사회 자율에 기대할 바가 없다, 정부의 역할밖에 없다든가, 극단적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극단의 편에 서면 시민 사회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쪽은 입법 자체가 불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일에 시민 사회의 자율성을 촉진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의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정부의 역할이 일정한 정도 필요하다,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논점에 있어서는 어느 선으로 그것을 우리가 합의할 것이냐, 또는 정부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토론의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나과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 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지하고 있는 문제들, 무질서나 음란, 언어 폭력, 프라이버시 침해 등등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 기제로 정부가 안을 제안함으로써 지금 이 논쟁이 촉발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반해서, 소위 사이버 상의 범죄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단 정부의 시각은 온라인이 결국 오프라인의 질서와 따로 갈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행위와 같이, 같은 자리에서 판단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제기를 해 주셨고, 전응휘 선생님은 사법 관할권 문제 등등과 관련된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양극단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상의 여러 가지 질서에 관련된 문제와 오프라인 상의 질서 문제를 어떻게 같은 관점으로 볼 것이다라고 하면, 결국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사·벌과 관련된 형법 등 관련 법 체계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논쟁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응휘 선생님 발제에서 나온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 혹은 시민 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부분은 또 무엇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도메인 분쟁 위원회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나 시민 사회의 관점 등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나 시민 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아주 세부적인 토론은 2부에 남겨 두시면 2부에서 잘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손을 들어서 자기 간단한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나 질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성남 지역 네트워크 운영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9월 4일자, 어제 날짜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본격적인 조례 제정을 심의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려 왔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장을 시달한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에서 얘기하는 굳이 성남시 홈페이지와 관련된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안을 가지고 어떤 일반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표시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다분한 자의적인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국가 안녕이나 보안에 위반되는 경우, 그런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법부에서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이런 내용들이 다

분하고, 더군다나 시민들의 자율적인 동의를 거쳐서 논의되어질 수 있는 내용조차도 행정 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토론자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 유해 등급 이런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정보 통신 질서 확립법에 대한 본질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사전에 검열하고 차단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만 교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조례 1조에. 이 부분만 교묘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만약에 등급제를 하게 된다고 예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행정 기관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불법 정보도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법 정보에 관해서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의 요건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오가는 마당에 많은 시민 단체의 요구나 목소리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검열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문제가 최근에 된 조례 관련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기타사안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관련은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할 때, 등급제와 관련된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은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전체적 총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규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훈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작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 특별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인터넷에 대해서 외부에서 규제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학부모나 교사 같은 그런 분들로부터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사이버 공간 바깥에 있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 공청회에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법안의 취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

다. 그런데 이 논의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논의의 핵심이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올라온 게시물들이 10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규제를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정안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아니었는데도 이 부분이 부각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로 이 법안에 대항한 부류가 -10대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10대들과 관련된 그런 논점들이 부각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했던 것 같구요, 시민 공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처음 시도되는 것들이고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거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율 규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이란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 인터넷 같이 굉장히 많은 전세계적 인구와,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굉장히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초기에서는 자율 규제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어도, 그러한 인터넷 상에서 직접 그리고 네티켓이나 인간적인 그런 면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만 주장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부와 시민 단체, 특히 자율 규제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주체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나 정통부의 역할이 왜 더 중요한가 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곳에서 자율 규제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인터넷 사업체들은 그 만큼 더 인터넷에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 중에 자율 규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 규제를 이야기했을 때,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취합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자율 규제를 정부가 계속 후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경미하지만 그런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내 놓고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모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점차 논의를 계속하면 될 것 같고,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나라에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님들의 요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논의를 진행시킬 때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 사회자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최승훈씨도 학부모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것과 개인의 책임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율 규제의 물적 기반이 취약해서 정부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패널들께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 … 아까 전응휘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 자원 관리 문제 등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들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 수사 기관이 개인 정보에 … 경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 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9일에 … 알고 있는데요 아까 나봉화 과장님 얘기하실 때에 이 부분이 삭제라고 했지만 최근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면서 시스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다라는 …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보기로는 현재의 법안에는 그와 관련된 …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 이 법에서 도대체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률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난데없이 무슨 백과사전 쓰듯이 관련된 법률을 싹 모아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을 때 도대체 이 법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보 질서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프라인 상과 온라인 상에서 … 먼저 드릴 말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영역의 자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동일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어떠

한 … 특이하게 왜 온라인만을 그것이 자유가 만연하고 있을 … 자유가 있을 때에는 꼭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 바로 이 보호 규제 강화 측면은 바로 시민 단체의 역할과 … 지금 인터넷 자율 등급제라든지 이용자 보호라든지 기타 법안의 본래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보호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규제가 성공하고 사이버 상의 불법이라든지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우리가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 이런 논점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정리한 논점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토론되었습니다. 지금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박선생님 말씀도 개인의 자유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 등 보호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심사와 같은 역할인데 법이 강화되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의 논점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 자원 관리 이런 부분들이 토론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 선생님들이 아까 하신 말씀 플러스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전응휘 처장

최선영씨(?)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저도 다 듣고 있는데 안 들어도 알만큼 압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도 알만큼 아는 것을 굳이 공청회에서까지 토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유해 정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공간에서 유해 정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의견을 물을 때에는 통신 공간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한테 묻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통신 공간에 대한 특성이 이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적인 토론이 별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티즌들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되어야 할 의견입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정부가 상당한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제 발표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부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법적 강제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강제 규정을 만들면서까지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자

율 규제로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율 규제로 갈 수 있는 움직임마저도 제동을 거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온라인 스페이스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불행하게도 온라인 스페이스가 그런 까닭입니다. ? 온라인 스페이스로 가서 상당히 많은 자유를 경험을 했거든요. ? 없는 공간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스페이스로 간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왜 특별히 더 자유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법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네트워크의 성격이 초국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토 안에서의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인데, 왜 그런 특별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나봉화 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저한테는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10대들의 글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유익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어떤 사태에 대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시민 사회의 역할 거기에 대한 진통이 되는데, 지금 전응휘 처장님이 '정부가 법적 강제를 만든다' 하는데 사실 정통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자율 규제하고 법적 규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양쪽이 수렴을 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도 정부가 그 안에서 자율 규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테두리를 제시하는 것이고 법적 강제를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보았는데, 모 일간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 그 일간지가 대체적으로 청소년은 잘 안 보는 그런 일간지인데, 의외로 저희 홈페이지가 검열 단계를 ?에 대해서 의외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55:45로 나와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 신문은 청소년층보다는 사회 기성층을 겨냥한다고 보는데, 학부모나 교사들이 이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전처장님은 '학부모들은 다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 키워 보고 자기 아이 가지고 키워 보면 다 알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로 알고 있지만, 싫어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다수가 많은 것인데 저는 그쪽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온라인 상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치유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철 실장님이 저한테 로그 파일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로그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어 있는데 8월 28일 시스템 다운

이 여러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정보통신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그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최소한 수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위험을 알아야 만이, 어떻게 보면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서비스 Deny를 공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떠서 유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스템도 사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익명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왜 거기에 차이점을 두어야 하느냐, 온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느냐, 인터넷 공간은 하나의 해방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것 아닌가요? 전혀 논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인 파일의 침해나 인터넷 테러나 내지는 공격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나과장님이 약간 논점을 틀어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자에 대해서 로그를 남겼든가 법적으로 로그 남기는 것을 불법화한다고 해도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기 서버가 ? 온라인 상에서 역추적을 해서 찾아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에서 다루는 것은 자기들이 로그를 남기고 싶지 않은데도 법에서는 반드시 남기게 해서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다른 얘기로 바꾸어서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법안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나과장님이나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온라인이 무법지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두지 않아도, 현행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사이버 상에서의 불법적인 테러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다른 사람에 대한 치명적인 명예 훼손은 추적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미비하다면 약간 보완만 하면 충분히 현행의 다른 법률로도 규제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네티즌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이용 촉진이 아니라 이용 제한을 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시민 사회에서 충분히 자율적인 장치들을 작동을 해서 지금 걱정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통부와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도와주면서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는 그런 중간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래도 안 된다, 해 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때는 시민 사회 내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법

률의 정당성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나 공공 도서관 같은 곳에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내용 분류·삭제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깝니다. 정통부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위험할 것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분명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F2 제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 사 회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교수)

· 발제

방석호(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백욱인(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 지정토론

신순갑(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홍성태(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어기준(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장)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 석 호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서론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 (略해서 '통신질서확립법안'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하에서는 '개정안'이라고 통일함)로 바뀌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다.

일찍이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電算網법'이라 함)은 1985년 11월 19일, 당시 민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서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이 그 제안 이유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이라는 애초의 법안[1]은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

1) 立法化의 주된 계기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를 再分掌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H/W부분은 전자공업진흥법에서 전자공업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었고, S/W부분은 직접적 관련 법률은 없이 기술용역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정도였으며, 통신 부문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관련 법규의 체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따라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들인 정부차원의 기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정보관련산업기술의 진흥과 標準化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법으로 당시 초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정보산업을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기술개발, 그 구성 및 운용, 役務의 제공, 관련器機의 생산조립, 기타 이에 관련된 用役에 관한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은 "전기통신 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定義함으로써 정보산업을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산업으로 파악하였지만 통신망뿐 아니라 관련 H/W, S/W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이 後에 결국 세상에 태어난 電算網法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需要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供給측면에서의 정부에 의한 일방적 計劃의 수립, 집행, 금융, 세제 等 정책적 지원 따위만을 규정하는 법과 달리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의 이용증대와 보급확대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도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 (案)의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수적인 H/W, S/W산업 정도만 다루는 法으로 축소되어졌고 이름도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90년대 들어 정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탄생, 199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내용에 따른 계보상으로는 이미 1985년에 제안되었지만 電算網法으로 왜곡되어 탄생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案)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電算網法은 원래의 모습을 갖추어서 다시 만들어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등을 삽입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여전히 남게 되었고, 작금에는 내용 규제라는 것까지 삽입하여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내용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내용 규제 관련 법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음반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2]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 기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3]) 심사하고 있다. 즉,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있다.

2) 매체물 개념 자체는 無形의 정보, 프로그램도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 (법 제 7조)

3) 보다 자세하게 다음과 같은 14개의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② 청소년에게 暴惡性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인륜적인 것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적용,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되면 '정보제공자[4]'는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여야 하고 내용물의 유통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내용물의 유통이 국경없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이라는 전혀 새로운 매체에 적용함에 있어 한계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제 8조 5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 제 10조 2항 역시 "그 매체물이 가지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체물' 자체의 등급을 9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의 3등급으로 구분,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後述하는 개정안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표시 의무 부과의 구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유통 제한의 구조가 비슷할 지라도 선진국에서 민간 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율적 등급 결정'과는 전혀 다르다.

행정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유해 매체물을 결정토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구조는 유통을 제한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며 따라서 형벌법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5].

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13조는 인터넷의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 99 헌가 16, 2000. 6. 29 결정.

결국 인터넷에서의 내용물 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 8조 5항에 따라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특정, 유통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 10조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 7조가 사용되어진다.

한편, 현행 법상 또 하나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시스템으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前者는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를 刑法에 비해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 체계이고, 後者는 不穩通信을 다루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을 양대 규제 기관으로 한 법 체계이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구체적 처벌에 있어서 대상이 '음란 對 不穩통신'으로 구별된다는 점 이외에 전기통신기본법은 현행 刑法 제 243조의 '猥書 頒布 등'의 규정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별히 구체화한 특칙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독자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不穩통신'에 대한 심의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 구성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담당토록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문제의 '不穩통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 16조의 4) 다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과 달리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사업자에 대한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음란물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접 유통시킨 경우는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그런 내용물을 유통시킨 이용자 자신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해당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함에 있어 처벌 규정으로만 살펴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유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기 (제 51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록 간접적 규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음란물을 직접 차단시키는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상대적

으로 정보제공자가 유해 매체물 표시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형사 고발을 통해 유해한 내용물 규제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6].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의 분류 자체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7] 적용 범위가 모든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 비해, 청소년 보호법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유해 표시 여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법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와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에의 시정 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의한 형사적 고발과 신속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하지 않던 유해물을 다루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미리 결정, 告示하게 되는 인터넷 유해물 기준에 따라 내용물 자체의 유해 표시 여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등급 표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표시 의무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만약 거짓으로 표시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일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 거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개인이 음란한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미국의 CDA I과 II 판결

1996년 2월에 제정된 미국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우며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6)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 10조를 중심으로 한 규제 기준보다 반드시 넓다고는 하기 어렵다. 청소년 보호법 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도 충분히 포괄적 기준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7)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각각 허가, 등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DA I"로 略함)을 별도의 章으로 삽입한 바 있다. 그러나 CDA I는 1997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 의해 違憲판결[8]을 받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터넷에서의 내용 규제를 둘러싼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6월 11일에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 違憲판결[9]을 시작으로 벌어진 법적 논쟁이 지금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규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違憲판결을 받은 '96년 통신법의 관련 條文은 CDA I 가운데 특별히 통신의 상대방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knowingly) 외설적인 (indecent) 내용물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전송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노골적으로 혐오적인 (patently offensive) 性的 내용물을 보내거나 顯示 (display)하기 위하여 쌍방향 (interactive)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요약된다.

"indecent"에 대한 것은 입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클린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 마자 바로 違憲소송이 제기된 부분인 반면, "patently offensive" 규정은 별도의 違憲소송을 통해 추가되었던 것으로서 결국 2개의 규정이 통합, 심리되었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문제 규정의 違憲性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유해 내용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代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代案가운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것이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프로그램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이고, H/W, S/W업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World Wide Web상의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기술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 탄생한 것으로서 참가한 단체들은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 방송 분야의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무역 업체, 그리고 公益단체 등도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만 한 것이었다. PICS 표준 (standard)은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등급을 매긴 인터넷의 site만 PIC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급을 매긴 site만 청소년들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만들었다.[10]

8) ACLU v. Reno, 117 S.Ct. 2329 (1997)

9)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t al., v. Janet Reno,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civil action No. 96-96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c., et al., v.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et al. (civil action No. 96-1458)

또 다른 기술적 代案으로 실용화된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었다. 당시 상용화되었던 것들로는 Cyber Patrol, CYBERsitter, The Internet Filter, Net Nanny, Parental Guidance, SurfWatch, Netscape Proxy Server, WebTrack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Cyber Patrol은 Micro Soft社가 1995년 8월에 개발한 것으로서 부모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으며, PICS 표준에 맞추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최초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부모)의 선택권에 바탕을 두면서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代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점점 널리 보급되어졌지만 현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 (image)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한편,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제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된 등급을 읽게 함으로써 접근을 제한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물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전세계적 통일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나 지역에서만 등급표시제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외설적 (indecent)인지의 판단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해 내려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등급표시제 시행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졌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의 Sloviter 재판장은 事前에 유해한 프로그램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술적 代案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용화되기에는 결국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3인의 판사가 모두 개별적 의견을 통해 違憲이라는 점에 일치를 보였고, 특히 Dalzel 판사는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인터넷 내용물 규제의 핵심적 키워드가 되어 버렸다.

10) 즉 PICS는 특정 site를 배제할 목적으로 구체적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 (일종의 negative list)을 택한 것이 아니라 site들을 가급적 다 포함시켜서 등급을 매김으로써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방식 (positive list)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는 강력함 (compelling)에도 불구하고 CDA I 관련 조문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broad)하기 때문에 成人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inherently vague)는 이유로 違憲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란하거나 (obscene), 아동 포르노그라피 (child pornography)에 대해서 만큼은 여전히 정부가 조사하고 起訴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문제의 CDA 조항에 대한 違憲 여부를 특히 2가지 측면에서 하였다.

즉 하나는 CDA가 내용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호함은 곧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 (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CDA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장한 免責 조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善意로 타당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는 유해한 내용물 등급표시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effective)"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잠재적 수용자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免責조항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비유한 Sable 판결[11]을 다시 인용하면서 CDA I는 인터넷의 상당한 영역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론적이고도 확인되지 않는 검열을 통한 이익보다는 민주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를 신장시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CDA I에 대해 違憲을 선언하였다.

CDA I의 違憲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표현 자유에서의 내용 규제를 정당화시켜 왔던 고전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child protection)를 정면에 내세워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일명 "CDA II", 또는 "COPA", 또는 제안한 Oxley의원의 이름을 따서 "Oxley법"이라고 불리움. 以下에서는 "CDA II"라 인용함)을 제정, 청소년들에게 有害한 (harmful)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

11)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28 (1989)

영자를 刑事처벌 할 수 있도록 1998년 10월, 통과시킴으로써 인터넷상의 유해 내용물 규제가 다시 위헌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CDA II는 웹사이트를 이용,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harmful to minors)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民, 刑事처벌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0일자로 CDA II의 집행 정지를 잠정적으로 (1998년 12월 4일까지만 집행의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被告인 정부가 1999년 2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결정함으로써 인터넷 외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또 다른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CDA II의 "harmful to minors" 조문 자체는 CDA I에서 違憲판결을 받았던 "indecent"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obscene"을 포함한 廣義의 "harmful" 단어 속에 포함되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개념 定義를 함에 있어서도 Miller 판결[12]의 3가지 기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違憲을 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CDA II의 보호 대상 자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CDA II는 음란을 제외한 나머지, 즉 외설물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13], 따라서 違憲 시비에 대한 타당성은 CDA I에서와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질 수밖에 없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무거운 刑事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 검열(censorship)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회복 불가능의 피해' (irreparable harm)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짧은 기간동안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더라도 이것은 곧 '회복 불가능의 피해'가 된다[14]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1999년 2월 1일자의 결정문[15]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의 법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은 물론이고 成人들까지도 내용물에 접근하기 전에 신용카드 또는 成人 식별 프로그램이 먼저 나타나도록 웹 사이트를 재조정하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되어져야 할 정당한 成人用 표현물까지도 과도한

12)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13) 1998년 11월 20일자의 결정문에서 담당 판사는 child pornography와 obscene한 내용물에 대한 검찰의 起訴나 搜査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4) Hohe v. Casey, 868 F. 2d 69 at 72, 73 (3rd Cir. 1989)

15) ACLU, et.al. v. Janet Reno, Civil Action No. 98-5591, February 1, 1999, http://www.aclu.org/court/acluvrenoII_pi_order.html.

규제속으로 밀어 넣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16] 또한 免責 규정에 있는 '내용 차단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에게 有害한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물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임을 들어 문제의 CDA II 규정이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 (least restrictive manner)'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이런 법원의 입장은 2000년 6월 22일 내려진 제 3 高等법원 (Circuit Court)의 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된다[17].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을 인터넷 음란, 외설물로부터 차단시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규제는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상 자유로운 접근을 과도하게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사회에서 논쟁을 벌일 가치가 있는 내용물조차도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규제나 특별한 등급제를 전제로 작동되어지는 프로그램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틀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18]. 특히 CDA II 역시 사업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과도한 자체 규제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면 後述할 현행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 (public library)에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체 규정의 違憲 문제를 다룬 1998년 11월 23일자의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례[19]가 도서관의 모든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내용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內規[20]가 오히려 有害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차단되는 결

16) 내용물 때문에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違憲을 추정케 한다는 Simon & Schuster, Inc. v. Members of the New York State Crime Victims Board, 502 U.S. 105, 115, (1991),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7 (1975) 연방 대법원 판결이 先例로 제시되었다. 특히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1 n.8 (1975)에서 일찍이 연방 대법원은 누드물을 公然히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drive-in-theater 주변에 담을 쌓아 올리는 비용 문제를 검토하면서 刑事處罰을 면하기 위해 영화 상영을 제한하거나 현실적으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선택의 강요는 표현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7) http://pacer.ca3.uscourts.gov:8080/C:/InetPub/ftproot/Opinions/991324.txt

18) 이런 우려는 특히 ACLU가 작성, 1997년 8월에 공표한 'Is Cyberspace Burning? How Rating and Blocking Proposals May Torch Free Speech on the Internet'(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에 잘 지적되어 있다.

19) Mainstream Loudoun v. Loudoun County Library Board of Trustees 사건, http://www.pfaw.org/courts/loudoun-ruling.html 참조.

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현재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의무 설치 규정 (제 34조)과 좋은 대비가 된다.

IV. 개정안에 대한 분석

1. 책임의 주체에 대한 오해

개정안은 현재 違憲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개념 대신 규제의 대상을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구분, 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후자는 내용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정보'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법부의 몫이 되어야 할 '위법성 판단'이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거쳐서 결정되고 형사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 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와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통제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을 소위 자율 규제 (self-regulation)로의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해 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제 38조) 비록 민간 단체의 의견을 듣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내용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草案은 적정하지 못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44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허위의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고 반박 내용의 게

20) 1997년 10월 20일, Board of Trustee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는 "Policy on Internet Sexual Harassment"라는 內規를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도서관은 e-mail, 대화방, 포르노그라피를 제공하지 않으며, ②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음란물은 물론이고 청소년 (juveniles)에게 해로운 (harmful) 내용물을 차단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③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도서관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④ 이용자들은 포르노그라피 내용물을 검색할 수 없으며, 이용 중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4개 규정이다. 違憲의 시비가 붙은 것은 2번째 부분이다.

재, 손해 배상의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 42조) 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사업자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얼마든지 轉嫁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더욱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廣義로 파악,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불법 내용물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함으로써 개정안은 자율 규제 이념의 실천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업자의 뒤에서 형사 책임의 무기를 가지고 정부가 숨어 있음으로써 사업자가 또 하나의 검열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교묘한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주장해온 바이다[21].

개정안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정부측의 논리는 상식적으로나 법 논리적으로나 전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내용물을 차단시켜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역무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석론상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는 취하고 있다[22].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불법 정보인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은 아니다. 더욱이 형사 처벌의 근거를 해석론에 의해 이끌어 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罪刑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을 엉뚱한 조문에 근거한 牽强附會的 논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보매개자의 경우는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되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광의로 파악, 법적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를 매개하는 자가 내용 통제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 논리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 법 논리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자나 직접 만든 자가 아니라 매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내용 통제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 원칙을

21)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oecd-398.html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2000. 7. 20

스스로 깨뜨리는 違憲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認知 책임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 가능한 경우"에만 (제 36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파악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버렸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 - 정보 매개자 (접속을 제공하는 자) -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사슬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내용 차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기대 가능하다"는 요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즉 현실적으로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극소수 소규모 독립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와의 협조를 얻으면 내용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연대하여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어 버렸다.

법리적으로 이 요건 자체는 1997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법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 IuKDG) 제 1조에 규정된 '제 3자 제공의 정보를 이용토록 접속하여 주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번역한 듯하다. 따라서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는 독일 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그런 구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告知로 인한 認知 책임'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제공한 내용물에 대해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까지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告知로 인한 認知책임' (제 28조, 36조)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내용 삭제를 하던 하지 않던 旣遂犯이 되어 버리고 내용 삭제를 할 경우에는 並刑에서 정상참작만 되어 버리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친다.

불법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有無罪를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방적 告知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는 사업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되는 내용물에 대한 사전 검열까지도 가능케 하는 違憲 조항임에 틀림없다. 즉 내용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정확히 확정, 규제하려 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廣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違憲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된다. 실제 불법 내용물을 사후에 認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그런 통지를 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내용 검열을 수시로 하더라도 어쩌다가 잘못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刑事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망이 연결되어지는 사업자끼리도 과도한 상호 내용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불법 정보외에 다른 정당한 정보까지도 사업자에 의해 다함께 미리 걸러지도록 만들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개정안은 불법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를 전달하는 매개자, 심지어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 단체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정보를 접하는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관련 사업자를 행정기관의 선택에 따라 쉽게 刑事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천만한 구조를 통해 사전에 사적 검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뒤에서 강요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내용 등급제

청소년유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신이 스스로 표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3자가 등급을 부여하는 검열이 아니다"라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 보호법과 대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유해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등급을 표시하면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成人에게는 볼 권리도 보장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즉 "기존의 심의 규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정보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양자에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 (rat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사이트 목록 자체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선택의 최종 권한이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에

게 귀속되어지는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내용물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기는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옹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내용 등급제는 최근 AOL Europe, Microsoft, IBM, British Telecom, Bertelsmann Foundation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ICRA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결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용 등급제 자체는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 어떤 내용의 제공이 스스로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CNN, Wall Street Journal 등과 같은 언론 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내용 제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모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혹은 최소한 한 국가 내에서라도 단일 표준에 의한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기관은 사업자를 내세운 내용 검열에의 유혹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규제 기관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법과 제도의 감시 구조가 갖추어진 선진 국가에서라면 내용 등급제 프로그램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보이코트 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내용 등급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제약적 결정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의 CDA처럼 내용 규제를 형사처벌로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代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형 내용 등급제인지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틀속에서 이용자의 자율적 정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23]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는 외형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등급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23) INCORE (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가 2000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Self-labelling and filtering)에서 강조한 원칙중의 하나도 최종 이용자가 정보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http://www.ipso.cec.be/iap/INCOREreport.doc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제 77조 제 4항)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등급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하는 S/W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 34조) 점에서 결코 외국의 경우처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 등급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단일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 등급제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표현 자유는 물론이고, 학문 자유에 대해서도[24] 직접적 위협이 되는 違憲 조항이다.

정부 스스로도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를 순수한 의미의 자율 규제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즉 미국식의 자율 규제 모델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계층의 높은 정보이용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경우는 국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부분의 불법 정보 사이트가 놓여 있으며, 청소년 보호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통산성 주도하의 내용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25]. 그러나 일본에서 내용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면에 등장하는 것과는 출발부터 차이가 난다.

이런 결론은 설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여전히 등급제 운영의 주체인 위원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고 위원회 자체가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위원회로 남아 있는 한 달라질 수가 없다.

V. 두려운 사적 검열 (privatized censorship)

민주주의에서의 언론 자유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이한 의견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가질 때 지켜질 수 있다. 언론 자유가 소중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법과 제도가 배려를 하여야 한다. 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

24) 특히 공립 학교에서 정부가 만든 내용 등급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思想의 통제로 인한 違憲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5) 각주 22의 공청회 자료 참조.

다. 전화, 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 새로운 언론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력은 늘어났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쉽게 동감할 수 있지만 개인이 speaker이면서 listener가 되고, 자기가 만든 내용물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에서 정부의 관여 방식은 보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 행하는 정부의 간여는 유해한 내용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나 사전 경고와 같은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상실된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거나 청소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위법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일수록 보다 확실하게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CDA 판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서 내용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가 시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기준은 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②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③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⑤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가장 고전적인 언론 자유인 '정치적 비판의 자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비판을 匿名으로 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행정 지침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가 제대로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 기관이 모든 정보를 심의하고,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급을 매기는 개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못 느끼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향후 우리가 개정안의 추이를 보면서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은 자율을 假裝한 타율,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검열 장치들에 대한 것들이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내용 규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도 형사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있다면 그것은 자율을 假裝한 교묘한 타율 규제이며,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불법인 셈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다행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행정 기관이 내용 규제를 위

한 기관으로 비교적 정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자신이 만들고 제공한 정보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았는지, 또 심지어는 영장없이도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함부로 민간 사업자의 영업장을 수색하여도 헌법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식과 법 논리에 의해 쉽게 해답을 낼 수가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사업자를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내용 규제 자체를 둘러싼 조문들은 아직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state censorship) 단계를 못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지나치게 넓게 定義한 사업자를 정면에 내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형사처벌로 위협하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하도록 법을 통해 유도한다면 '사적 단체로 검열이 잠적하여 버리는 구조' (privatized censorship)가 되어 버리며, 헌법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용자 개인에게 더욱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대가의 크기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전세계의 모든 단체들이 부단히 같이 노력한 정도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법률 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백 욱 인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1. 인터넷 가버넌스와 규제(검열)

"아무리 인자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인터넷에서 내용 규제를 한다는 것을 지구촌 전체에서 돼지를 굽는 꼴이 될 것이다."(통신 품위법 위헌 판결)

* 인터넷 검열과 통제

검열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의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차단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1996 Decency law
1998 "Child Online Protection Act(COPA)
2000 통신질서법

검열과 정보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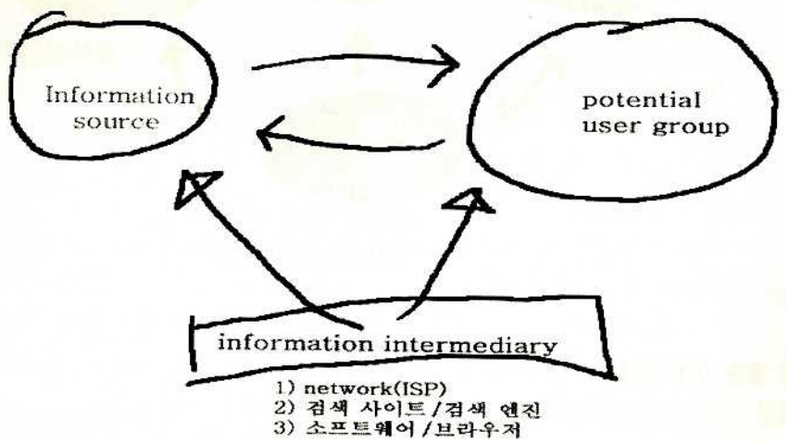

정보생산자 : 국내/국외, 상업적 컨텐츠 사업자/단체/개인
정보 사용자 : 연령계층(청소년, 아동)/소득계층(저소득층, 주변층)/취향집단/계급
정보 차단의 방식 : 소프트웨어/등급제/법률/자율(technology based censor or control)
차단 지점 --> 정보 공급자 규제/ 정보 사용자 규제
정보 차단의 주체 : 국가, 시민사회, 가정, 개인
* information selection process에 대한 개입과 통제 : 정보 선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정보 관련 권리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통제(검열)의 4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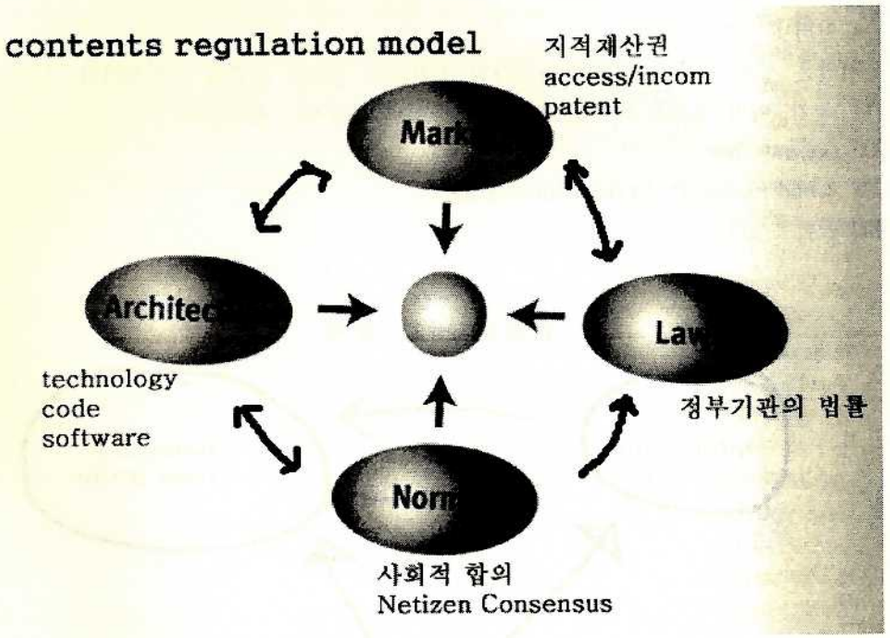

1) 시장을 통한 정보 통제

네트에 대한 악세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장 요인
현재는 망 사용이나 하드웨어 설비 정도가 악세스와 관련됨(public access 문제)

앞으로 카피라이트도 검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트를 광의로 적용하여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사상과 표현 자체-특히 안티 사이트나 패러니-를 저작권 적용으로 무력화시킨다.

2) architecture를 통한 통제

인터넷은 개방형, 분산형, interoperability를 갖는 수평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갖는다.
그러나 네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트 아키텍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부는 통제 불능했던 것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government's power to regulate code of the Net
앞으로 누가 네트의 코드를 통제하는가의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코드 통제를 둘러싸고 전문가집단/기술자/관료/사용자/자본간의 대립과 갈등 형성
open code/clsed code와 통제(검열)

검열주의자/규제주의자	cyberliberal/libertarian	형성주의자 (코드협약주의)
cyberspace는 규제되어야 한다 학무모/종교단체/정부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cyberspace는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net anarchism Jeffersonian Democracy	네트와 cyberspace는 새로운 협약에 기반에 잘 다음 어져야 한다. 새로운 규약과 공동체 형성
현실의 연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현실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네트	초기 네티즌 Barlow-->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두 개의 왕국 분리론 사이버 스페이스 자연권/천부인권론	Lessig 사이버스페이스는 협약에 입각한 새로운 regulation이 필요함. 누가 어떻게 협약을 만드냐가 중요

3) 도덕, 법률을 통한 규제

2. 네트 검열에 대한 입장

네트는 초기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규제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네트의 상업화와 규제의 증대
초기 네티즌의 아나키즘과 공유와 나눔의 문화는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
네트에 대한 규제와 개입은 불가피한가?

이에 대한 세가지 입장
1) 불가피하다. 통제되어야 한다
2) 아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독립해야 한다
3) 불가피하다면 잘 만들자

네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률로 네트의 컨텐츠를 검열, 통제하려할 때 과연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어떻게 형성했으며,
기본권의 문제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3. 통신질서법과 검열 문제

1) 네티즌 주권에 위배/국가 주도의 검열
2) 과정의 졸속/합의 배제
3)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적용 대상의 광의성 : 뉴스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
등급기준심의 기구 설치안-->방송위보다 막강한 검열과 통제를 꿈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컨텐츠'-->등급표시 의무화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유해정보'/'청소년비유해 정보 제공 사업자' 유인책 제시
'해외 컨텐츠'에도 등급 표시

* Zoning and Filtering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RSAC(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의 등급제

Level 4	Rape or wanton, gratuitous violence	Frontal nudity (qualifying as provocative display)	Explicit sexual acts or sex crimes	Crude, vulgar language or extreme hate speech
Level 3	Aggressive violence or death to humans	Frontal nudity	Non-explicit sexual acts	Strong language or hate speech
Level 2	Destruction of realistic objects	Partial nudity	Clothed sexual touching	Moderate expletives or profanity
Level 1	Injury to human being	Revealing attire	Passionate kissing	Mild expletives
Level 0	None of the above or sports related	None of the above	None of the above or innocent kissing; romance	None of the above

* Safesurf의 등급 분류
SS~~000. Age Range
1) All Ages
2) Older Children
3) Teens
4) Older Teens
5) Adult Supervision Recommended
6) Adults
7) Limited to Adults
8) Adults Only
9) Explicitly for Adults

SS~~001. Profanity
SS~~002. Heterosexual Themes
SS~~003. Homosexual Themes
SS~~004. Nudity

SS~~005. Violence
SS~~006. Sex, Violence, and Profanity
SS~~007. Intolerance - (Intolerance of another person's racial, religious, or gender backround)
SS~~008. Glorifying Drug Use
SS~~009. Other Adult Themes
SS~~00A. Gambling

* raring system
1) 검열 기관 등급제(third party)
2) 공급자 등급제(self-rating)
3) 사용자 등급제(user-based blocking programs)

녹취 - 제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의 윤영민입니다. 2부 순서가 진행되어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부에서 발제하실 분과 지정 토론하실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홍익대학교의 방석호 교수님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서울 산업대의 백욱인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지정토론으로 나와주신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신순갑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을 맡아주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홍성태박사님입니다. 다음은 역시 지정토론을 맡아주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의 어기준소장님입니다.

굉장히 긴 공청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2시 20분까지 수업인데 2시 5분전에 수업을 짤라먹고 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시민모임이고, 오늘 강의가 사이버 공간의 탈 억제 현상에 관해서 강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오다가 전철 안에서 생각해봤더니 오늘 주제가 바로 내 강의와 거의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결국은 탈 억제성을 갖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에 관한 국민들의 선택에 관한 오늘의 중요한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초점을 모아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방석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 방석호 교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를 하나 들고다니다가 어디 놔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구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처음 볼 때 다른 사람과 달리 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보화촉진법에 대해서 제가 초안을 만든 것이 91년이었는데 그것이 시행된 것이 9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법안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나와서 정보화 사회의 틀을 잡자라고 법안이 등장한 것이 85년이었고, 저는 그때 한국에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정보화촉진기본법안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만들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만들면서 늘 나온 주장이 이제

전산망법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반조성법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처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정보산업이라는 단어를 한 부처가 쓰면 독점한다고 해서 당시 체신부에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부처들이 워낙 반대가 심한 바람에 명칭도 전산망법으로 바뀌게 되고 상당히 변형 되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시기적으로 타이밍도 맞고 그래서 정보통신부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탄생이 되게 되었죠. 연역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래된 법을 다시 부활시킨 건데 그러면 당연히 전산망법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기본법과 같은 것도 당연히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흡수되는 것이 법체계 상으로 맞고 그런 것인데 이게 공청회 같은데 나가도 그렇고 늘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어떤 감회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법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고 법을 만들기는 우리 나라처럼 쉬운 데가 또 없습니다. 공청회라고 되있는데 뚝딱뚝딱 해서 만들기도 하고 저도 사실 사무관하고 한 주일만에 작업해서 법만들고 그런 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으레 형식적으로 되지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무슨 기구니 협회니 같은 것이 달라붙어 가지고 더더구나 고치기가 어렵게 된 게 우리의 법문화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법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억측이나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입수한 자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들에 보니까 에 법논리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내용규제 관련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렇게 되 있는데 잘 알다시피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에 대한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통신질서확립법 통칭 얘기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부분의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고 몇 가지 차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CDA 판결 CDA 1, 2 판결이 있고 최근의 시민단체들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DA 2에 대한 연방고등법원의 위한 판결까지 'VICTORY' 그렇게 해서 소개해 놓은 것까지가 아마 최근의 소식일 것입니다. CDA1 과 2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나 연방 고등법원이 왜 위헌판결을 했느냐 그것을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되어 잇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자율규제자율규제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 규제의 개념하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자율규제의

개념이 똑같은가라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CDA1 과 2의 판결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규정이 모호하다,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죠. 규정이 애매하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규제의 대상,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모두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잔데, 그 사업자가 내용 규제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내용규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동원한 수단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이 위헌 판결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 수단이라는 것은 현재 통신질서확립법안에 있는 그대로 형사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하게 하면 사업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SELF REGULATION이란 이름 하에 자율 규제란 이름 하에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고 과도한 규제 속에는 걸러내서는 안될 것까지 한꺼번에 걸러내게 된다 그것이 판결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따라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현재 개정안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주체가 되어 있는 구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내용 규제의 주체로 바뀐다라고 할 때, 그 바뀐다는 것은 절대로 자율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 규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USER CONTROL이라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율 규제의 핵심인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자발적으로 보장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사업자가 등을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규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인가 그 차이점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속칭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외형상으로만 자율규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보장돼 있는 지금 법안인지, 위헌이냐 아니냐 과도한 규제냐 아니냐, 그것을 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의 제가 앞부분을 빼고 조금 더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22쪽에 있는 개정안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처음의 책임의 주체에 대한 오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내용등급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자 내용등급제라는 것은 정보통신부나 기타 다른 자료에 보게 되면은 유통 가능한 정보 그리고 유통이 제한된 정보를 스스로 표시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는데 왜 이거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제적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굉장히 행복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제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던 안 듣던 그것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격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 위원을 정보통신부 장

관이 임명하고 그것을 아무리 격상을 시켜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행정위원회입니다. 마치 공연윤리위원회가 과거에 영화법 10조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논리로 민간인이 들어가든 아니든 규제를 하는 것은 공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가 단일 기준을 만든다』 거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만든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고민이고, 반면에 외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단일한 표준안을 만들어 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정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단일한 기준을 만들어 낸다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의 수준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자율규제라는 것은 단일한 표준안을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든가 베르텔스만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미팅을 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한 단일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혹은 최소한 한 국가라도 채택한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채택되는 단일기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내용 등급이라는 것은 한나라에서의 단일기준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처럼 사이트를 차단하고서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죠.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그런 시장 지배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일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는 원치 않는 정보까지도 걸러내게 되고 그래서 CNN이나 Wallstreet Journal 같은 언론기관들은 내용등급제 자체를 반대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전쟁의 참화를 갖다 묘사 하고 싶은데 거기에 폭력이 있다고 해서 규제하고 CNN 전용의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급 제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모든 유용 가능한 정보를 그래도 100% 필터링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용 차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이 CDA 1, 2판결에서 연방 대법원과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검증이 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제도다. 우리 나라 얘기에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쓴 것이 돼지 굽기 위해서 그것과 똑같은 서양의 속담을 이용해서 과도한 규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또 하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만약에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내용등급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단일한 내용의 내용등급제라는 것은 법으로 강제된, 서양의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된 내용등급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데, 또 심지어는 크레디트 카드를 많이 쓰는데 크레디트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용하니까 편하니까 쓴다 말이죠. 내용등급제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됐다 그러면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차단하는 정보의 유통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법으로 얘기한다면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널리 보급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내용차단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된다면 원치 않는 내용물을 거르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부는 내용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논리들입니다. 그 논리들을 저는 전혀 우리 나라에서와 동떨어진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법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CDA1에서 나왔던, CDA1에서 잘못되었다고 나왔던 논리를 그대로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래 전에 얘기들, 없어졌어야 할 얘기들을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에 왜 하필 없어졌어야 할 논리를 부활시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불법정보에 대한 인지책임 얘기는 제가 23쪽 책임의 주체에 대한 오해 부분에서 23쪽 위에 정부의 논리를 적었는데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을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논리 들입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법논리들을 잔뜩 써놓아서 제가 적었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적었는데 모두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책임. 모든 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하게 되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정보를 만든 사람, 매개한 사람, 접속만 제공하는 사람 상당히 다양한 인터넷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존재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통제가능하고 내용을 인지할 때만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 solitary system 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통제를 해주니까 내용이 있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천리안이면 천리안 하이텔이면 하이텔, 사업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게시판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 따라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상 모든 사업자들로 연대책임지우는 만드는 가장 위험한 구

조입니다. 이 모든 사업자들, 사업자의 개념 정의를 굉장히 넓게 하고 그 넓게 잡은 사업자로 하여금 굉장히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형법에 의한다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에서도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을 이 개정안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책임을 안 져도 될, 논리적으로 책임에서 비껴가 있는 정보를 매개하는 사업자까지도 내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없을까 혹시 내가 매개하는 정도가 타당한 것인가 법으로 위반되었을 때 나도 연대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앞장서서 자체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privatized censorship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검열이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검열을 얘기하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중앙통제장치나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오는 검열에 대한 시비는 사적인 검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사적인 검열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떻게 인터넷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느냐 따라서 오해 말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등급제 얘기는 24쪽 이하에 거기에 인지책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법논리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지해서 네가 정보를 안 것으로 인지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차피 나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다 라고 버티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라고 하면 고지를 받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규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것은 고지를 받고 허겁지겁 현재와 같은 법체계 하에서는 네 전자게시판에 불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고지를 받게 되면 알아서 허겁지겁 삭제를 하게 될 텐데 이 법안에 따르면 고지를 받는 순간 모두 기소범이 되어 버립니다. 기소범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삭제를 하건 말건 그 사람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양형에서만 3년 이하의 징역에 때릴 것을 좀 봐줘서 그러면 과태료만 때리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를 하는 행정기관의 통지에 의해서 사업자의 양형이 결정되는 아주 위험한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적었습니다만, 내용등급제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CDA1의 위헌판결, 그리고 CDA 2가 연방고등법원까지 가서 위헌이다 라고 확인판결을 받게 되면서 기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나오는 내용등급제와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내용등급제가 다르다 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등급제는 , 단일한 내용등급제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시민단체들 다해서 좋은 의견 주면 만들겠다 그런 얘기겠고, 외국에서 얘기하는 내용등급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주도하에 여러 개의 표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르텔스만과 같은 독일 기업은 자기네 주도하에 아메리카 온라

인도 끌어들이고 마이크로 소프트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단일 표준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단일한 기준을 국가가 정부가 주도하에 만들겠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규제라는 것은 타율규제를 전제로 한 자율규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는 그래도 되나 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등급제라는 것은 그런 식의 자율규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은 것이 사적 검열 PRIVATIZED CENSORSHIP 얘기를 제가 적었는데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뭉뚱그려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6P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락만 제가 읽고서 말을 정리할까 합니다.

' 향후 우리가 개정안의 추이를 보면서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자율을 가장한 타율,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검열 장치들에 대한 것들이다.' 이 검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거칠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검열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거친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견을 결정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 강제한다 그것을 우리가 검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 과거처럼 가위질한다 그것을 검열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검열의 개념이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민간사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내용 규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제가 그 본문의 개념 안에 있는 형사처벌의 규정들을 드문드문 적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아실 겁니다. '그것도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과도한 자체 검열' 사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 100명한테 내가 이 가운데 한 명한테만 F를 주겠다 했을 때 학생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F 받을 확률은 1/100에 불과하지만 내가 언젠가 F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대상은 모든 사업자다 모든 서비스제공 사업자다 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무관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도한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자연스럽게 오버액션을 하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논리는 제 논리가 아니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논리고 수없이 많은 시민단체들, 웹사이트에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오래된 논쟁을 지금 와서 또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나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을 보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개정안은 다행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내용 규제를 위한 기관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법을 공

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이고, 어떤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으로 명확하게 열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준 사법권, 마리 코자(??) 의 준 사법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책임, 고지해서 네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형사책임을 진다라고 통제하는 순간 그것은 사법부가 재판, 판결을 내린 것과 똑같은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고 제공한 정보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영장 없이도 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함부로 민간사업자의 영업장을 수색하여도 헌법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식과 법논리에 의해서 쉽게 해답을 낼 수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사업자를 등장시키고 있지만 내용 규제 자체를 둘러싼 조문들은 아직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 단계를 못 넘고 있기 때문이다 ' 만약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하게끔 한다고 했으면 법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권 논쟁에서 우리는 아직도 공권, 사권, 공법, 사법을 구별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사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확장 적용될 수 있는가는 상당한 논란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 개정안은 그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이 아주 명쾌합니다. 결론을 내리기가 아주 명쾌하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적단체로 검열이 잠적해버리는 구조인데, 이 문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규제체계가 조금더 정치(정체 ??)하게 되면 될수록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방석호 교수님께서는 개정 법령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리적 관점에서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책임 주체의 문제, 내용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타율 규제성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적 검열의 문제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백욱인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 백욱인 교수

예 저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앞에 발제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 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행히도 제가 이 발제를 맡아달라고 연락을 받은 지 얼마 안되

고 자꾸 일이 꼬이는 바람에 완결된 글로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제 말하기 위한 보조자료 정도로만 가져왔습니다. 제 얘기를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공청회까지 현재까지 느낀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겁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일단 처음 드는 의문이고, 누가 이 법안을 도대체 어떤 경과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냐. 주체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도 대단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건 확인은 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법안을 만드는데 자문을 구하고 했다는데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하고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직접 윤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등등해서 상당히 황당한 경험들이 있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법안을 본 것에 의하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온라인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사적 정보에 대한 보호와 공적 정보의 공개라는 두가지 위상에 걸맞는 어떠한 법적 장치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네트워크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나 법안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법적 조건을 만드는 것도 벅찰 텐데. 핵심은 저는 이 법안의 핵심은 앞에 나오니까 그건거 같지만, 사실은 이후 뒷부분에 이용과 관련해서 4장 이후 건전한 정보 통신 질서의 확립 이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감으로는 일단 '건전한' 이렇게 나오면 별로 기분이 나쁜데, 불건전한 제 입장에서의 소감인데. 뭐가 건전하고 불건전한지 마치 60-70년대 유신시절 건전가요를 연상시키는 이런 발상이 왜 지금 현재 네트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나와야 하는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먼저 censor 검열에 대해서 범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문을 보면, "아무리 인자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인터넷에서 내용 규제를 한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에서 돼지를 굽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돼지는 네티즌을 의미합니다. 이런 통신품위법 위헌 판결에 이런 말을 판사가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표를 보십시오.

검열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의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차단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검열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차단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차단하는가 정치적 목적에서 차단하는가 경제적 목적에서 차단하는가 아니면 그 밖의 등등.

이 세 가지 부분들에서 명확한 이 법과 관련해서 잡아내야 할텐데. 제가 아직까지 아는 걸로는 누가라고 하면은 크게는 정보통신부일 것이고 그 산하 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 검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일단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자세하게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차단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을 걸었지만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빌미 이외에 숨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차단하는가 하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숨은 다른 의도나 본인들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발제 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지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법안을 대할 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검열과 정보통제 그 표를 보시면 대체로 정보 소스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정보가 유저 그룹으로 전달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양쪽에 다 검열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소스 부분 다른 말로 하면 정보 생산자, 혹은 생산자, 사용자 혹은 그것을 올려놓는 통신 회사 등등이 그런 것이 이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을 검열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에 검열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ISP를 포함한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중간 매개자가 검열 주체가 그 부분을 쩔러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검색 사이트나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나 브라우저 등등의 코드에 입각한 검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라는 게 여러분 법률 조항이라는 말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짜는데 쓰는 그 코드라는 것도 있고 이중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조항에 의거한 검열이나 통제와 더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진법으로 짜진 코드에 의한 통제 , CODE BASED CENSOR 가 되겠죠. 이런 것이 내용등급제나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제를 통한 규제는 실현성의 차원에서 볼 때 별로 실현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해서 이렇게 실현하도록 무던히 애를 써도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네트의 특성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법안에 책임을 져서 진짜 법치국가에서 이 법안에 효과를 보겠다고 작심하고 나서게 되면 가능, 실현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드에 입각한, 코드를 사용한 검열 통제의 방식, 그것을 사업자 부분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나 코드의 실제 표준의 장악을 통

한 규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등급제를 포괄적으로 실행하게 해서 그 부분의 표준을 장악하는 어떤 한 회사의 등급제나 혹은 어떤 한 집안의 등급제가 그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터넷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코드화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 법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법안 45조 5항에 되게 재미있는 항인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정보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에 당해 국가의 불법정보처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우려하는 음란물 정보는 미국이 제일 많을텐데 미국에 불법정보처리기구가 어디 있으며 이걸 어떻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효력을 발생하게 할 것인지 실현 불가능한 법안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 부분에 더 관심을 두어서 코드로 이런 것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겠지만 그래서 정보 생산자 부분에 대한 통제부분에서 국내와 국외가 있다면 이런 국내법으로는 국외는 통제할 수 없다는 이런 지금 현실상황.

그 다음에 상업적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통제부분인데 여기서는 주로 상업적 컨텐츠를 제공자에 대한 그것도 청소년 유해물과 연관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급제 및 등급표시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사실은 한 나라의 다리를 건너서 결국 개인에 대한 개인이 올리는 정보에 대한 censor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해 청소년 관련 내용물 유해 사업자라고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글을 올리는 개인까지도 censor 가능한 부분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 사용자 부분에서 정보 사용자는 연령계층별로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계급별로 이미 여러 가지 이미 제한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집단들도 광의의 censor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특정한 정보를 보고 싶은데 access 자체를 못해서 못 보는 경우는 경제적인 censor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안에서 청소년이나 아동 같은 연령 계층을 부여한 차단, censor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흐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용자로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일반 user들 다른 네티즌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런 censor의 규제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단 방식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틀로 이를 실행할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기술 의존적인 틀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실현성이

거의 없는 그런 안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단의 주체가 국가인지 시민사회인지 개인인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을 만든 주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선별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정보에 관련된 일반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것을 빌미로 상당부분 무리 있는 심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 자리에 학부모나 교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 뱀장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장사가 뱀 팔면서 애들은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가다가 다시 오잖아요. 애들은 다시 온다구요. 애들은 다시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애들은 뱀이 보고 싶은 거지 뱀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은 뱀이 재미있고 궁금하니까 오는 거지,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뱀먹으라고 약팔으려고 하는 얘기는 애들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학부모나 교사 단체가 아무리 여기서 이런 등급제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일단 역관계에서 상대가 안될 겁니다. 사용능력이나 access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엄마가 아침에 아무리 등급제 열심히 배워서 설정을 해놓아도 풀어버리면 그만이고 다른 브라우저 쓰면 그만이고, 이런 실행 불가능한 안을 왜 만들어서 골치를 썩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뭘 가르쳐야 하냐면, 그렇다고 학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애들이 포르노를 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나 교사에게는. 왜 이런 쓸데없는 등급제를 마련해 가지고 쓸데없는 매도 맞고 쓸데없는 욕도 들어먹고 이 짓을 왜하냐 하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라고 할 때 또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보호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보호한다는 겁니까. 좀 광범위한 얘기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 두발 문제가 네트워크에서 nocut이라는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애들 머리카락을 그렇게 짧게 깎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폭력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애들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상이 70년대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네트라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한심이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애들 머리를 깎으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애가 난폭해지잖아요. 청소년한테 머리

를 한번 깎여 보세요. 그러면 애가 얼마나 화가 나고 자기 인격에 대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애를 더 난폭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상당부분 진짜 자율이나 학생들의 이런 행동에 대한 보호를 원한다면 다른 방식이, 아주 좋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구태여 20년전 이런 무식한 틀로 규제를 하고, 실현성이 있으면 그나마 뜻이 갸륵하니까 나쁜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저희가 믿고 지지도 하고 이럴 생각이 들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현성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실현성은 엉뚱한데서 실현성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청소년 보호나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딴 곳에서, 예를 들면 정부의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통제라든가 사건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여지들을 거꾸로 열어주면서 청소년 보호는 하나도 하지도 못하는 실현성이 없는, 이런 법안을 왜 만드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도 문제인 것이, 이런 중요한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이 큰 법안을 만들면서 왜 중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느냐. 공청회 한번 해서 알려준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정상에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를 잠깐 보십시오. 보면, 이것은 레지(??) 교수의 표를 제가 약간 변형을 한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내용에 대한 통제나 censor는 이런 네 가지 영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통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나 혹은 통신망에 access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혹은 수입부분이나 혹은 특허 같은 것들을 거두어서 특정 정보에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음란물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음란물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해 정보와 다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법률로 된 부분이 바로 지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이 법안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 기관을 통한 내용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rchitectur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술을 통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혹은 망과 연결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한 내용 검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연관을 맺겠죠. 아까 제가 이 법은 실행 불가능하다. 실현성이 없다 하면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architecture와의 연관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혹은 코드를 사용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실현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행해버리면 곤란한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법률이 아닌 어떤 규범이나 가치 혹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합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열, 필터

링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법률에 의한,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부분인데,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앞으로 시장에 의한 내용 규제가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 소유권에 의한 저작권의 틀로 상당부분 활성화 될 수 있는, 음란물과는 상관없이 다른 진짜 필요한 덕목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 부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와는 딱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터넷 자체가 자유인데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인터넷은 이제까지,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방적이고 분산적이고 상호호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architecture에 기반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개입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듯이 국제부분도 문제가 되고 실효성이 없는데 만약 정부가 마음먹고 코드를 바꾼다거나 이 architecture 자체를 바꾸면 통제 가능합니다. 항상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큰맘먹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architecture를 만들고 architecture를 통한 센터를 가능하게 하면 이 법안에서 원하는 것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한번 이 문제를 둘러싼 세력관계를 거칠게 도식적으로 한번 봐보면, 검열이나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보자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3의 입장이 가능한데, 아마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 이런 법안을 만드신 분들이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학부모나 종교 단체나 이런 분들이 검열과 규제를 통해서 아이디를 보호하려던가 음란 정보를 몰아내자던가, 건전한 사회를 육성 발전시키자던가 이런 관점에서 여기를 볼 때에는 현실과 즉 리얼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 간의 차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너네 별난 것들인데 따지냐 하는 식으로 현실법의 적용 대상으로 네트를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봐도 좋은데. 그렇게 봐서 사실 문제 있으면 다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architecture상의 특성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현실에서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보다는 훨씬 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 영역에서 제동을 거는 것의 1/10만 제동을 걸어도 커다란 censor와 억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간의 초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우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을 주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속할텐데, 이 경우에는 완전한 분리, 자체 내에서의 자유권만을 주장하는 것인

데 제 3의 영역에서 그럼 좋다.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역기능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협약에 기반한 그런 틀에 입각한 새로운 규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관한 과정들이 지금 전부 생략된 채로 이루어지는 검열주의, 규제주의 틀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네트에 관련해서 규제와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 아까 말한 규제주의적 입장일 것이구요, 아니고 사이버 스페이스는 독립해야한다, 세 번째 불가피하다면 잘 만들자 이런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트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협약을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네티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그들의 합의와 그들의 틀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런 것들을 훨씬 존중해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위에 있는 것은 뭐 이런 식의 zoning 이나 filtering을 통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뭐 정리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또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변화하는 현재의 조건은 뭐냐하면 p2p 라는 냅스터 이후의 그누텔라나 아니면 프리넷에서 전개하고 있는 peer to peer 나 개인 대 개인에서의 정보교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런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제, 음란정보물 통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거고,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실효성을 강화하려다 보면 불가피하게 개인사용자를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법은 지독한, 한번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손대기 시작하면 지독한 저항과 지독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빨리 거두어 들이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백욱인 교수님께서는 일단 법안 생성 과정에서의 정당성의 문제도 제기하시고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 주셨고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통제로 귀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발제하신 분들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세분의 지정토론자들이 있습니다. 순서는 없다보니, 어떤 분이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신순갑 선생님, 10분 정도로 해주십시오.

▶ 신순갑 선생

예 우선 두분 말씀 잘 들었구요. 저는 청소년 단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쪽 정보부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련된 법률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들이 있더랍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듣고서 화가 굉장히 좀 무척 많이 났었습니다. 왜냐, 실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법률들을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청소년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내걸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에서 내걸은 명분대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정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성과 관련된 강간이라든지 이러한 사회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야 정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관련된 법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수치를 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의아하게. 왜냐. 그것은 실제적으로 청소년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그만큼 정보에 대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객관화시켜서 마냥 애들이니까 아까 백교수님이 뱀장사 빗대서 말씀하셨듯이, 전형적으로 애들이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먼저 좀 현황통계 부분에서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소년범죄 현황에서 대해서는 97, 98, 99 연도 3개년 도만 하겠습니다. 형법범은 97년 99,000명 98년 100,000명 약간 올랐습니다. 99년에는 94,000명 그리고 특별범의 경우에는 97년에는 53,000명 98년도에는 48,000명 99 년의 경우에는 47,000명 전체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전체적으로 큰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전체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부분에서 강간을 보겠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전체 범죄자 중에서 소년범의 %로 따지겠습니다. 먼저 94년부터 20.4%, 95년도 13.8%, 96년도 11.2%, 97년도 10.8%, 98년도 10.2%, 99년도 9.2%, 폭력도 97년도 15.2%, 98년도 13.5%, 99년도 11%입니다. 점점 다 하향추세로 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부분에서 학생 범죄자의 학력별 분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98년도 262명, 99년도 205명, 낮아졌죠 중학생의 경우 98년도 17,857명, 99년도 15,000명, 고등학생의 경우 98년도 45,000명, 99년도 42,000명 이게 경찰 백서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계 뿐만이 아니라 지금 MBC 백서

에 나온 97년도 98년도 99년도 통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 폭력과 청소년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청소년들 스스로가 유해 환경이라든지 유해 정보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일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수여중 폭력사건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청소년 네티즌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보도에서 사실은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네티즌들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사건들은 어떤 사건을 담고 있느냐 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이 여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들이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것이 바로 네티즌들의 힘인데, 기성언론들은 뒤늦게 뒤늦게 끼여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성언론들은 그것의 해결의 의지나 혹은 그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접하지 못하고 네티즌들의 문제점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지적한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저도 동의하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규제들이 사회단체라든지 또한 네티즌들 스스로에게도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제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태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홍성태 박사

예 반갑습니다. 홍성태입니다. 이 자리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몇 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속 비판하는 얘기들만 나와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시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봉하 과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 없는 다수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좀 그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자리를 잘못 찾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랄까 그 사람 표현으로 치자면 시끄러운 소수의 목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설쳐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었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공청회 자리에서 소리 없는 다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방석호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전

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율을 가장한 타율이라고 하는 것, 자율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법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율 규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순전히 규제의 한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규제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가치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가. 새로운 통신망은 어째서 자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논의를 해야할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욱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법이 사실상은 실현 불가능하다.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죠. 이것은 뭐 CDA 법을 본따서 규제를 하려고 했을 때부터 전문가들에게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과연 이 법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였었죠. 백욱인 선생님은 무엇보다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구태여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백욱인 선생님께서 이것을 하셨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해주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혐의라고 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7월 20일에 이 법에 관련된 공청회가 처음 열리기 그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듣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이 나라가 조금 발전하겠구나. 그런데 그날 가서 그 법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우리 성격에서는 이 법과 관련해서 법안 내용을 가지고 일단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하는 질서확립법이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조직과 관련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활법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망라되어 있는 권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은, 민간자율기구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있는 명칭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아까 방석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상의 사법기관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법안 뒷부분에 보면 10가지로 요약이 되어있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법이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진 느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헌법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이걸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것을 법안을 만드는 시행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이 법에 어떤 식으로 투영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가지는 이 법을 보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것은 갈수록 새로운 대중매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대중매체로 인터넷을 봤을 때, 정부차원에서는 또다른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부처간에.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정보통신부가 문화부를 제치고 인터넷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인상을 역시 또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가지점, 인터넷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통신부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빼놓고서는 이 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나오는데 이 점에는 정말 아까 유신시대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아 정말 우리가 기본권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원칙으로 중요하며 존중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너무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얕다 아직도 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 실효성이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한다고 막 애쓰며 나서게되면 정부가 참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이데올로기적 배경은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일상을, 세수도 씻겨 주고 밑도 닦아주고 하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손을 봐준다는 이런 자상한 가부장으로서의 국가, 국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 가부장제는 그렇지만 정말 따뜻하고 인자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로서의 이미지 이면에는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파시즘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에 반대하는 대부분이 십대들이었다. 일단 그것은 뭐랄까요 보호를 당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보호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열받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세대적 문화차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일단 그 위원회 구성이 나이든 분들로 되어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기술적 전문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과연 정말 늘 말하듯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그 기술에 빨리 접할수록 그 기술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이 인터넷의 특성을 잘 알고, 거기에 새로운 윤리를 제시해줄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노인네들의 윤리적 잣대로 젊은이들을 윤리적으로 길들이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 대립과 갈등의 문제, 기술적 특성의 이해 정도의 문제가 걸려있다고 봅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런 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점은, 뭐 이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제가

관련된 글을 쓰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것 이른바 사이버 국경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청소년 보호위원회측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홈페이지 첫화면을 보고 제가 참 기겁을 했지만 하여튼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널리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청소년을 비롯해서 주부들까지도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에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뭐냐면 성인과 주부를 구별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말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방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냐하면 제가 그걸 보고 아 윤리위원회나 뭐 보호 위원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마초 가부장제구나. 철저한 남성주의면서.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실제 성윤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떠나신 것 같은데 라봉하 과장이 당신도 자식을 키워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결혼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애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뭐 아이를 가진 사람들 많죠. 그런데 제 주위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서 아마 그렇겠지만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개인론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절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거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률적이고 상당히 뭐랄까 전통적인 그런 윤리관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켜볼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고치고자 한다면 인터넷 가지고 괜히 이러지 말자. 그러면 저 어딥니까 거기, 일산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일산 전체가 카바레니 룸살롱에 러브호텔 동네로 변해가고 있는데 무슨 학교 앞에도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뭐 이런 식입니다. 농촌가면 더 심하죠.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진짜 막으려고 한다면. 청소년 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쏟아야할 돈과 인력이 그런데 가서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막고,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없애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청소년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보호라고 하는 명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누구를 보호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타성적으로 명백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보호 이데올로기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의 자유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감사합니다. 네 홍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타율적인 규제의 문제점 특히 법안이 가지고 있는 권력적 측면에서의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든가 정보통신부의 이해관계도 반영되어 있다든가 그런 지적들을 하셨고. 특히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의 가치나 아니면 가부장적 국가론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보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정토론의 마지막으로 어기준 소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 어기준 소장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의 어기준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컴퓨터 음란물 피해 예방에 관한 일이거든요. 오늘 토론회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음란물에 대한 부분이 좀 겹칩니다. 다른 토론회와 다르게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음란물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가끔씩 협조하거나 또는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늘 토론회를 들어오니까 음란물과 관련해서 공통으로 일하는 기관인줄 알았더니 어떻게 좀 big brother와 같은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나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아직도 컴퓨터나 사이버 문화에 관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아노미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하나의 연장에서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통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인간적이었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기술적으로 통신을 해서 들어와서 서로의 기술적인 정보를 나누거나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반드시 누구누구님 하고 호칭을 해주었구요. 그런데 pc 통신을 지나서 인터넷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어가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대하는 언어라든가 혹은 기술적 구사능력이라는 것을 보면은 뭔가 좀 과거의 따뜻했던 인터페이스, 그런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좀 뭔가 차갑고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구요.

자 이제 제가 부딪히고 있는 컴퓨터 음란물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을 좀 보면은, 청소년들이 과연 자정능력이 있는가. 많은 부모님들이 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저 역시 성장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때 책을 보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쪽에 접하게 되었는데. 자정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있는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음란물을 보았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우리가 자랄 때는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좀 드물었는데 요즘학생들은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실습도 잘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9%에 달하는 학생들이, 남학생은 조금 더 높고 여학생은 조금더 낮지만 음란물 중독의 가용성으로 보이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약 10%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음란물 중독증이라는 단어가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인 8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물론 책이 있고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이전에는 음란물 중독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라는 이런 매체들이 과거와는 다른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굳이 음란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중독증이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런 토론이 과거의 매체와 그런 부분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율규제란 부분 여기서 나타난 것인데 정부가 하든 개인기업이 하든 결국은 규제의 문제에 들어오게 되는데. 규제 참 좋죠, 규제는 자율 규제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95년도 이후부터 인터넷 차단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했냐하면은 그 이전에 인터넷망에 의한 청소년들의 납치나 유괴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아메리칸 온라인의 비서에 보면 음란물 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제재하지 않는 것이 아메리칸 온라인의 성장 비결이다 라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지금 아메리칸 온라인은 그 감시 인원이 모니터링 인원이 15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나라 보통 150만명, 200만명 규모를 하이텔이나 천리안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대로 모니터링 하려면 15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자그마치 125명 정도의 인원이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윤리에 의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성인들에게는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에 대해서 최소한 클리어링, 모니터링 하는 효과를 하는 요원들을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천리안이 대답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음란 정보를 유통하면서 어느 정도 벌었습니까 했을 때 성인정보만 약 8% 되는 비중이 있었는데 업계에 알려지기로는 연간 12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고, 그리고 자체 발표에 의하면 70억 정도를 벌었

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70억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감시인원 못 두었다?

자 또하나 예를 드리죠. 우리 나라 채팅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스카이러브가 있습니다. 아 s사 라고 하죠. 그 회사가 올해 초부터 갑자기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팅 내용의 70-80%는 음란 대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번섹이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갑자기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가 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그 담당자들이 서울지검에 불려가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씩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떤 규제 조건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들어가 봐도 역시 그런 사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대화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란 부분이 참 기업이 윤리를 가지고, 참 벌껀 벌되 안벌껀 안번다하는 식의 기업 윤리를 가지면 좋은데 그 윤리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자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100% 차단 효과가 없다. 물론 기술적으로 차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도 숨어서 봤습니다. 저도 빌려서 몰래 봤습니다. 그렇지마는 100% 차단이 안되더라도 부모님이라는 통제적인 수단이 여기서는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돌려준다던가 하는 최소한의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접촉 빈도를 줄여주는 중독현상까지 가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내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봐야 우리 나라 영역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접촉빈도를 줄이는 방법은 물론 아이들이 그 날고기는 아이들이 그 막는다고 못 볼거 아닙니다. 과거의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숨어서 보았듯이 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굳이 필요한 부분은 접촉빈도를 줄이는 부분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용등급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들, 음란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우리 나라에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저도 역시 검색솔루션 프로그램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마는 저 역시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등급이,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들은 일부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회사도 있고 어쨌든 영리 목적으로 만든 회사도 있지마는, 자꾸 자료가 피드백 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부분에서 내용등급제의 필

요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늦지마는 이런 논의가 지금이라도 진행되는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치열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란물 부분에서 제가 지금 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여기 이 법안을 보니까 더 다른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CDA법안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언급됐던 바거든요. CDA 1 법안이 나왔을 때 펜트하우스나 플레이보이가 반대한 것을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가 반대했을까 라는 부분을 짚어 봤는데, 우리 나라가 지난 해 8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ISP 차단 대책이 나왔을 때도 같은 논리가 나왔듯이 과도한 어떤 정보나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의 견제나 이런 대로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안이든 한번에 완벽한 안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은 넘치는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자제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대안을 좀 찾아나가는 것을 바라구요, 이 논의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식의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어떤 이런 대안을 찾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갔더니 어떤 주부의 성문제도 관여를 한다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컴퓨터, 인터넷의 성문화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채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심각합니다. 여학생이 이미 3명이 사망했구요 그리고 인신매매 당하거나 성폭행 당한 예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사이버 문화,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하는 사이버 문화의 부재함 때문에 주부의 그런 부분이, 원하지 않는 성적일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취재 대문에 한 기자를 만났더니 강남 쪽에서 이혼 상담센터에서 나온 얘기가 주부가 이혼을 원인을 제공하는 사유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채팅으로 인한 불륜과 나이트 클럽 부킹으로 인한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트 클럽 부킹으로 인한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채팅으로 인한 부분은 접근이 어떤 식이냐 하면은 시간이 남으니까 혹은 얘기 상대를 찾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구요 그래서 좀 약간 주제를 벗어난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순리적으로 봐서 회귀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감사합니다. 어기준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청소년들의 자정능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윤리 부족으로 인해서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 그래서 차단 소프트웨어나 내용등급제는 청소년들의 이해 음란물에 대한 접촉빈도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혹은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라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논의를 플로어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순갑 선생님께서 잠깐 보충발언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갑 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청소년 자정능력에 대한 말씀인데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만나보면 그것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수치가 이것은 경찰 백서뿐만이 아니라 MBC 백서 역시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이 빈대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뭐 플레이보이지라든가 그런거 우리도 어렸을 때 플레이보이지나 펜트하우스 이런 거 다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보는 청소년들은 플레이보이지 펜트하우스 책자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어른들은 이런 거 생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뭐 화면에서 동영상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니까 어른들 보면 기겁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지겨워서 안 본다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이제 넌더리가 난다. 안봅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많이 접해봤던 아이들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채팅에 대한 문젠데, 이중에 계신 분들 채팅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70-80%가 음란 채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물론 음란 채팅 있죠. 실제적으로 음란 채팅 있는데 뭐 스카이러브라든지 이런 좀 나름대로 기업화되어서 하는 데에는 70-80%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대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아까 저 성수여중 말씀드리다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수여중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은 거기에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고발입니다. 그것은 가해자 쪽에서의 고발인데, 그것은 저 경찰력을 대상으로 한 고발입니다. IP address를 추적해서 찾아서 고발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티즌들이 상당히 겁을 먹었었어요.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네티즌들의 90%가 청소년들

이었고 저는 그것들을 일련의 진행상황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인터넷에 대한 등급제가 적용되고 모두 검열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자기 이름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올릴 것이며, 정부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며 기존의 정책적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글들을 어느 누가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지정토론이 끝났으니까 혹시 두분 발제자 선생님께서 토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 방석호 교수

잠깐만 말씀을 드리죠. 저는 스스로를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자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골수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것이 이런 공청회에 나가면 꼭 법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 얘기로 역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음란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음란물이라는 것은 법에 보면 불법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물은 이 법이 없어도 당연히 규제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물이 처벌을 받는다 규제를 받는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온라인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법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자거나 자율 규제하면 법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율규제라는 법이 명확하게 공간을 짓고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보자. 확보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나온 자율 규제의 얘기입니다. 불법 정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고지로 인한 인지책임의 구조입니다. 그 고지로 인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지에 의해서 네가 형사책임 질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나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고을 사또가 불러서 곤장 때리면서 니죄는 니가 알렸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다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증거를 모아 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다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지 거꾸로 통보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기술

적으로 전혀 몰랐다거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법논리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청소년 유해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등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등급제를 기술적 대안으로 외국도 하고 있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중심으로 된 단일한 등급의 내용등급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내용등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우리도 아메리칸 온라인이나 베르텔스만이나 시장 주도 전세계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내용등급제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나 국가들도 있는데 거기에 끼여들어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한국형 내용등급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하지 말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 백욱인 교수

예 저는 제가 폐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소모적 대응은 하지 말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을 자르십시오. 이 법을 어떻게 짜르냐하면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 충실한 내용을 가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 무엇이 프라이버시인지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해야한고 유출은 어떻게 해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해당 현실을 파악한 후에 그 법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과 관련한 유해정보 유통 방지 제한에 대한 법 내지는 청소년과 관련된 무슨 법 해서 따로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 이런 거 하나 만들고 해서 짜개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 방금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 속한 이 법안 아까 어떻게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제가 아까 그 과정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허실하게 나온 법안을 다시 만들고 싶으면 특징을 찾고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짜개서 하나하나 법안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실제로 된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다시 만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보기에 채팅과 불륜은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불륜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사회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어기준 소장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 어기준 소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신순갑 국장님은 청소년 단체에 계신 분이고 음란물 관련해서 조금 부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보면 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 문제거든요. 저는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통계 자료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은 아이들과의 직접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보았을 때, 야 너 컴퓨터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약 70% 되는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음란물 어느 정도로 봤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약 90%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보급률을 넘어가느냐 했을 때 친구 집에 가서 보거나, pc방에 가서 본다는 여러 경로가 있다는 거죠. 음란물의 경우 남자아이들은 주로 사진형태로 보거든요. 그러면 질리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물론 보자마자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런 것을 질릴 때까지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수개월에서 2-3년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질리면 좋은데 컴퓨터 음란물은 여러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소설을 읽게 됩니다. 또 전이가 되어 갑니다.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를 동네중학생 아이들이 윤간을 했는데 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처럼 너 이거 신고하면 인터넷 상에 뿌릴 꺼야. 이것이 야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런 것을 교과서적으로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구요.

그리고 아까 채팅을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 70-80% 정도가 음란 채팅이었다가 검찰의 어떤 제지를 받고 지금은 50% 선을 왔다리갔다리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말씀 안 드린 것은 다시 수정드리구요. 그리고 채팅과 불륜에 관한 부분은 하나 부언 드리면요, 특히 채팅에 관해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유용합니다. 채팅을 하다 보면은 폔팔 효과라고 해서 저희가 지칭하는데 사이버 공간에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아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컴퓨터 좀 해 라고 했더니 가르쳐 줬더니 채팅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채팅을 심하게 한 걸 알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거 많이 하면 이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했냐하면은 당신 같은 인간들이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채팅하는 그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주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EBS 의 모 유명한 시사토크 어쩌구저쩌구 하시는 분은 절대로 채팅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조건을 달겠습니다. 첫째로 발언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셔야 겠습니다. 여기서는 실명으로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분이 맥시멈 5분을 넘지 않도록 제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백욱인 교수

영화등급제와 다른 점은 영화는 일년에 몇 편 안나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어도 100편 안으로 200편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인터넷에서 등급을 매길 것은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영화등급과 이 부분은 맞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라도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라면 몇 명은 찾아내고 몇 명은 못 찾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불평등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딴 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보냐 거꾸로 그러면, 이것은 음란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연관이 된다면 역시 맞지 않는 얘기고 굳이 청소년을 음란물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면 현재 같은 이런 방식 말고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그리고 갈라내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을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프라이버시와 다른 것과 그리고 기구 설치법 같은 것을 갈라내서 오해의 소지 없게, 저라고 청소년 애들 막 음란물 보면서 니네 그래 적응력을 키워라 하겠어요.

▶ 백욱인 교수

이거 진짜 중요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건데. 웹 브라우저에 있는 등급제를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FCC 에서는 등급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면 하고 그리고 아까도 방석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랑 이것을 비교

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 유해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유해가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자

예 두분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다음 분.

▶ 피스넷 고양우

정통부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논리를 제시하라.

-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이야기

▶ 어기준 소장

컴퓨터 윤리와 관련해서 96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거의 같은 시작을 했는데 둘은 보완관계라고 하지만 거의 경쟁관계였어요. 여기서 제가 편을 들어주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약간 좀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용등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찬성하는 부분은 어른들이... 오히려 이 내용등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른들의 볼거리가 조금 더 신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속이 비치는 옷을 입는 것도 음란물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등급에 의하면 그 정도는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성이 보호의 대상이냐 하고 하셨는데 제가 96년 처음 시작했을 때 컴퓨터 음란물 접촉 빈도를 줄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컴퓨터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지 않게 하자. 99년 말부터는 컴퓨터 음란물 피해 예방입니다. 그 이전에는 10대 청소년에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갔어요. 보통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당해요. 성인 사이트에 잘못 가입한다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 자기 신체에 대한 부분 직접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응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는 저

회 홈페이지에 채팅 관련 대응 요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보고 참조하시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 쪽이시죠. 말씀하셨는데 음란물이 왜 위험하냐하면은 물론 그것을 소화하실 능력이 있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의식에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거에는 책을 통해 접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은 아주 개인적인 기기죠. . 자기 방에서 보죠. 원하면 반복해서 보죠. 예를 들어서 성인 사이트나 성인 방송에서 가입한다면 벗어라 명령을 하면 상대방이 벗습니다. 이런 쌍방향적인 특성이 잇기 때문에 과거의 매체와는 특성이 많이 다르구요. 그리고 잠복기나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채팅 관련해서는 여느 음란물 관련해서는 남자들이 많이 충동적입니다. 남학생들이. 그런데 여성들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서는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평가들이 여학생들은 걷잡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것은 저는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길게 보면은 성상담소 자료를 뒤져보면은 이 사람이 착실하게 대학생활하고 사회에 적응했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보았던 음란물을 실습하려는 신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인 부분은 바른 성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채팅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잠복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90년대 초반에는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모니터링 했을 때 여학생이 1명 들어오면은 남학생들이 따로따로 대화하자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남학생이 들어오면은 괜찮다 싶으면 여학생들이 헌팅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민변의 김기중 변호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굉장히 첨예한 이슈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공청회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변화가 있더라구요 아마 오늘 공청회도 비록 결론 은 없지만 느낀 것도 있고 분명히 이 법안에 과정에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비약한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잇는 문화적인 이해가 선험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도 너무도 모르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너무 행동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계기가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수용하는 데 있어서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녹취록은 녹음상태가 불완전하여 녹취가 가능한 부분만 문서화 하였습니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를 제외한 방청석 발언은 거의 문서화 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